

노원구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

2026년 10월 8일

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



1. 내 용 : 노원구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설치

2. 설치목적 : 불법주정차단속

3. 관련근거

- 가.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제한)
- 나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- 다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4. 설치 예정 장소 : 1개소

연 번	장소명	주소
1	서울어울림체육센터 앞	동일로1690-2

5.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6. 10. 8. ~ 2026. 10. 28.(20일간)

6. 공고방법: 노원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nowon.go.kr>)

7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(붙임1)를 작성하여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다. 제 출 처: 노원구청 교통지도과

라. 제출방법

- 우 편: (우)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(상계동, 노원구청), 별관3층 교통지도과
- 팩 스: 02)2116-4642

마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바. 문 의 처: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담당자 (02-2116-4087)

[붙임 1]

의 건 제 출 서				
사 업 명		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 소			
설치예정위치	검토의견 (의견제출내용)			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6 년 월 일 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				